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302
------	------

2023.12.19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3일, 박유진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결과

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12.19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유진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.
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4항 신설).
- ‘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함 (안 제11조제1항).

## Ⅲ. 검토의견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, 2년마다 실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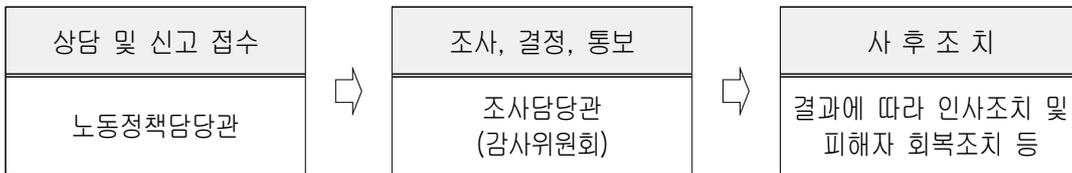
### 나.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

-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, 2019년 7월 「근로기준법」이

개정·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조치 절차, 벌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.

- 이에 서울시는 법 시행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·시행(2020.1.9.)하고,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계획’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·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음.

### <직장 내 괴롭힘 신고·처리 업무 절차도>



- 그리고 동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220건으로, 그 중 30건은 권고조치를 받았음.

### <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 >

(사건 신고일 기준)

연도	신고건수	결 과					
		기각	취하	각하	권고	조사 중지	조사중 해결
총 계	220	97	40	43	30	7	3
2023.11.	32	10	10	10	1	1	-
2022	67	38	9	6	12	1	1
2021	63	26	10	10	13	3	1
2020	58	23	11	17	4	2	1

#### 다. 예방교육의 위탁 규정 신설(안 제7조제4항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<sup>1)</sup>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고,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라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동 조례 제7조<sup>2)</sup>에 따라 노무사 등의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현장교육, 인재개발원 e-러닝,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 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2) 「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라.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의무화(안 제11조제1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<u>공표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공표</u> ----- -----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2020년과 2023년<sup>3)</sup>에는 본청 및 사업소, 2021년에는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시 내부 정책 수단 마련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음.
- 그러나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, 업무의 명확성,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,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사료됨.

3)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2023. 12. 22. 도출 예정임.

- 다만, 실태조사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및 평가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### <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응답률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3년
설문기관	본청, 사업소	투자·출연기관	본청, 사업소
설문대상(A)	10,607	29,253	10,998
응답수(B) <sup>4)</sup>	737	6,827	3,555
응답률(B/A)	6.9	23.3	32.3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4) 동일번호 연속응답 등의 불성실 응답, 기관별 응답자 기준수 미달 등으로 응답수와 실제 분석에 사용한 분석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유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박유진, 김지향, 박수빈,  
박승진, 봉양순, 아이수루,  
이원형, 전병주, 한·신,  
홍국표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 4항 신설)
- 나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함 (안 제11조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  
「형법」  
「남녀고용평등법」  
「민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표할 수 있다”를 “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<u>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<u>공표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공표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100800000002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박유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8.

회신일 : 2022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제4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186,200천원(연평균 37,24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37,24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- 발생되는 비용은 전문기관 위탁시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접 교육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중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전직원 대상 유사한 위탁교육 사업을 찾을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
  - 서울시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교육대상 및 교육 성격이 유사한 법정 의무 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예산과 동일하다고 전제
  - 다만, 교육콘텐츠 개발비는 2023년 예산에 기편성(15,000천원)되어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

※ 기편성 예산현황 :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

(단위 : 천원)

과목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- 15,000,000원 * 1식	= 15,000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= 186,200천원(연평균37,240천원)

- 총비용 =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	소계(b)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□ 총 비용(b-a)	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
○ 직원대상 직장 내 괴롭힘 통합예방교육(본청)  
 = [(강사료 × 15회) + (진행비(사무용품비))] × 5년  
 = [(360천원 × 15회) + 12,440천원] × 5년  
 = 17,840천원 × 5년 = 89,200천원

○ 관리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특별교육  
 = [(강사료 × 10회) + (진행비(사무용품비))] × 5년  
 = [(360천원 × 10회) + 8,600천원] × 5년  
 = 12,200천원 × 5년 = 61,000천원

○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 
 = 강사료 × 1회 × 20개소 × 5년  
 = 360천원 × 1회 × 20개소 × 5년  
 = 7,200천원 × 5년 = 36,000천원

※ 강사료 :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전문강사 2시간 기준으로 계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무관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**붙임 ) 2023년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예산현황**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	= 17,840천원
	- 강사료	= 5,400천원
	- 360,000원*15회	
	- 진행비	= 12,440천원
	- 12,440,000원	
	○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	= 12,200천원
	- 강사료	= 3,600천원
	- 360,000원*10회	
	- 진행비	= 8,600천원
	- 8,600,000원	
	○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	= 7,200천원
	- 강사료	= 7,200천원
	- 360,000원*20개소	
	○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	= 20,000천원
	- e-러닝강좌 개발	= 20,000천원
	- 10,000,000원*2개	
○ 직원 대상 폭력예방 홍보	= 10,000천원	
- 캠페인	= 10,000천원	
- 연4회*2,500,000원		
○ 성희롱·성폭력심의회 운영	= 24,960천원	
- 위원회 참석수당	= 16,200천원	
- 300,000원*9명*6회		
- 조사보고서 전문가 자문비	= 3,000천원	
- 200,000원*1명*15회		
- 외부전문가 조사비	= 4,500천원	
- 300,000원*5회*3명		
- 외부회의실 대관료	= 1,260천원	
- 21,000원*20시간*3회		
○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	= 15,000천원	
- 피해자 지원(법률,심리·의료 지원)	= 15,000천원	
- 1,000,000원*15명		
○ 성희롱성폭력 결정례집 발간	= 6,000천원	
○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발간	= 10,000천원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○ 직장내 폭력예방 업무추진	= 3,000천원

(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예산서 참조)